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5월 12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5월 12일

3. 제안이유

-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업무 성격이 유사한 자동차등록사무와 형평을 유지함은 물론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등록과 그 부수적인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져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건설기계 등록 및 그 부수적인 사무 (소유권변경등록, 이관등록, 말소등록, 저당권등록등)와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이수자에 대한 이수증 교부 및 관리업무를 위임.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기계 등록사무에 대해 유사업무인 자동차 등록사무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민원에 효율적인 대처와 아울러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임 사무의 조정으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기위임되어 있는 도시계획과 소관 16개 단위 사무에 건설기계등록과 그 부수적 사무인 소유권 변경등록, 이관등록, 말소등록, 저당권등록 등과 소형 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이수자에 대한 이수증 교부 및 관리 업무등 25개 단위 사무를 확대조정 신설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려는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6. 칙 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